

## IV.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규제

### 1.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조치 사항

- 발생농장 및 감염우려가 있는 인근농장(반경 500m 범위이내) 가축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 전체 살처분 실시
- 살처분 범위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리적 조건, 가축사육형태, 분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
- 발생농장을 기점으로 보호지역(반경 10km이내)과 경계지역(반경 10~20km)을 설정하여 가축 및 차량등의 이동제한 실시

#### 〈우제류 동물〉

- 보호지역은 예방주사 및 임상·혈청검사 실시
- 경계지역은 예찰실시
- 지정도축장 출하목적으로 반출시 도축후 도축부산물(뼈·내장 등) 소독·폐기 조건으로 이동 허용
  - 관내 도축장 및 육가공장 부족에 따라 경계지역 밖의 도축장, 육가공장까지 확대 지정
  - 도축후 냉장처리된 정육만 유통허용 (경계지역은 지육까지 유통)

#### 〈사료·축산분뇨·음식물쓰레기 등〉

- 보호지역과 경계지역을 구분하여 이동금지 또는 반출제한 등 조치

#### 〈기타 인공수정 등〉

- 인공수정 : 보호지역은 금지, 경계지역 자제
- 가축시장 : 보호지역은 폐쇄, 경계지역은 잠정폐쇄
- 사람, 일반차량 : 소독후 통행허용

### 2. 방역규제 조정 필요성

- 국내 최초 발생한 구제역의 초동방역을 위해 현행규정(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국제기준 등에 의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 위험도가 다소 낮은 경계지역까지 도축부산물 처리를 규제함으로써 소독·폐기가 어려워지고, 경계지역의 축소요구 건의가 쇄도
- 경계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가축과 차량 등에 대한 효율적 이동제한 조치의 한계

-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가축을 모두 수매하고 있으나 처리 시설 부족과 타지역 반출처리에 따른 "넘비현상" 대두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으로 지역내 주민의 불편 및 가축 수매·부산물 폐기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 3km 이내 원유·20km 이내 도축부산물의 폐기 및 처리 비용 과중
- 일반지역 보다 유리한 조건의 수매로 과체중(110kg 이상) 돼지 등이 이동제한 지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 발생 우려
- 특히, 파주지역의 경우 이동제한 기간중 임상·혈청검사, 예방접종,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를 지역주민의 협조로 성실하게 시행하여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을 감안
- 경계지역에 한해 우선으로 방역 규제조치를 살처분 후 3주가 경과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해 줄 필요성이 있음.
- ※ 4. 16. 발생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규제 해제 및 금후 조정방안에 대해 차관보 주재 축산국·검역원 관계관 협의회 개최

### 3.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규제 조정 방안

#### 1) 이동제한 지역별 해제시기 및 방역관리

##### < 기본 방향 >

-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단계적 해제
  - 경계지역 : 최종 발생지역 우제류 동물 살처분 완료일부터 21일 경과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
  - 보호지역 :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을 고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30일 경과후 혈청(항원)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
    - 단, 예방접종 가축은 해제이후도 특별관리 실시
- 경계지역 방역규제는 해제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
  - 사료·원유·도축부산물·축산분뇨·음식물 쓰레기 등은 정상 유통
  - 일정기간 질병 예찰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 지속적 유지
- 보호지역은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방역규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

- 경계지역
  - 해제일자 : 추가발생이 없으면 최종 발생지역 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 경과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날

- 단, 이동제한 기간동안 해당 시군이 취한 임상·혈청검사, 예방접종, 이동통제 등 이행내용이 평가·분석되어야 함
- ※ 구제역이 발생되어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졌던 6개 시·군 파주, 화성, 보령, 홍성, 충주, 용인 등(5월13일 현재) 전지역의 이동제한은 해제되었다.
- 또한 잠정 폐쇄되었던 전국가축시장도 5월11일부터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개장토록 하였으며 이동제한지역내에 위치하는 홍성,광천,충주,오산,파주 가축시장은 5월말까지 연장조치하였고 6월부터 해당 시·도지사가 적절한 시기에 개장조치함..
-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기간동안 취해진 모든 규제사항을 전면적 해제하되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
- 관할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속적인 질병예찰 실시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원에서 모니터링 혈청검사 실시

#### □ 보호지역

- 해제일자 : 추가발생이 없더라도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경과후 혈청(항원) 검사 음성으로 판정된 날
- 다만, 예방접종 가축은 해제이후에도 [특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
- 해제기한이 도래되기 이전이라도 방역 규제조치는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부분적으로 완화조치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보호지역내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 지속 실시
- 보호지역내 1차접종은 강제 실시
- 2차접종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우제류가축 모두 실시.
- 다만, 돼지에 대하여는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회신결과에 따라 2차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결정

#### □ 발생지역(살처분농장)

- 해제일자 : 보호지역 해제일과 같음
- 해제기한이 도래되기 이전이라도 방역규제조치는 부분적으로 완화조치
- 다만, 축산분뇨는 사용을 금지, 매몰하거나 소독후 폐기
- 가축의 재입식은 호주, EU 등의 관례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입식허용
- 살처분 완료 30일 경과후 시험입식기간(2개월)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허용
- 30일 경과기간동안 발생농장 및 살처분 가축의 사육농장 축사에 대한 주기적 소독실시
- 《예방접종 전두수 조기실시를 위한 행정조치》
- 예방접종 미접종 가축은 정부 구매에서 제외하고 도축도 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방주사 실시를 명령하고 거부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예방접종 미실시로 향후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처분을 하게 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검토

2) 이동제한기간중 방역규제 조치 조정

□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보호지역의 경우

구 분	방역규제 조정 내역	비 고
① 예방접종가축	지정도축장 출하허용	
② 원유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고온멸균 처리후 유통	
③ 도축부산물	소독·폐기, 랜더링시설에서 열처리후 폐기 또는 재활용, 도축장안에서 심부온도 70℃로 30분 이상 열처리후 식용유통(냉장처리된 정육만 유통)	
④ 축산분뇨	농장밖 반출금지. 다만, 축분발효비료 완제품·소독처리된 액비는 유통 허용하고 완전발효된 액비나 액상분뇨(슬러리)는 지역내 살포허용, 지역내 공동처리시설로 운송시도 반출허용	
⑤ 배합사료	농장밖 반출금지, 농장내 자체 소진	
⑥ 건초·볏짚	국내산은 자체소진, 중국산은 역학조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용여부 결정	
⑦ 음식물쓰레기	소독처리후 반출 또는 지역내 매물	
⑧ 인공수정	지역내 생산금지, 타지역산 정액도 사용자제	
⑨ 사료공장·차량	세척·소독후 운행	
⑩ 우유공장·차량	세척·소독후 운행	
⑪ 가축수송차량	지정도축장의 우제류 수송차량은 통행금지	
⑫ 종축장 새끼	농장밖 이동금지. 단, 공인기관에 등록된 순종돈, 원종돈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7일(소는 14일) 후 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 허용	
⑬ 자연교배	금지	
⑭ 가축시장	폐쇄조치 유지	
⑮ 기타 사람·차량	소독후 통행허용	

□ 이동제한이 진행중인 경계·보호지역의 경우

- 도축부산물 처리조건외에는 "별첨1"의 현행 방역조치 유지

3) 금후 조치계획

- 기본방향에 의한 해제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 방안, 경계지역의 조정, 경계·보호지역별 도축부산물의 처리 조정안을 작성, 생산자단체·전문가·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후 관계기관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정(4.29까지)

-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방안 : "별첨 2"
- 경계지역 조정방안 : 국내규정, EU규정 및 미국·일본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현재 구제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
- 도축부산물 처리 : 경계지역에서 생산된 도축부산물의 방역상 위해요소를 검토하고 정상 유통·부분유통 등 단계별 조정안 작성후 의견수렴
- 과제중(110kg이상) 돼지에 대한 수매는 이동제한 해제일을 기준으로 1주일간 수매토록 조치
  -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의 출하 적체 요인 해소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축의 수매제한 조치 시달(기조치)

< 별첨 >

1. 이동제한지역 세부조치내역 1부.
2.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방안 1부.

< 별첨 >

1. 이동제한지역 방역조치사항 요약

구분	발생지역 (살처분지역)	보호지역		경계지역 (10~20km)	비고
		3km이내	3~10km		
1. 가축	전두수 살처분, 신규입식 제한	이동금지	좌 등	좌 등	지정도축장 출하시 조건부 이동 허용
2. 원유	소독후 폐기 또는 매물	소독후 폐기	고온멸균 처리후 유통	좌 등	
3. 가축분뇨	농장반출금지	제한지역밖 반출금지	좌 등	좌 등	제한지역내 공동처리 시설로 운송 허용
4. 사료 (건초포함)	소독·소각 또는 매물	제한지역밖 반출금지	좌 등	수송차량의 세척·소독후 제한 지역밖 반출허용	
5. 음식물 쓰레기	소독·소각 또는 매물	제한지역밖 반출금지	좌 등	좌 등	
6. 부산물	-	지정도축장에 시 소독·폐기	좌 등	좌 등	제한지역밖 랜더링 처리시설 운반·처리 허용(분뇨의 스팀처리도 허용)
7. 예방접종	-	우계류동물 전두수 접종 금지	좌 등	미접종	
8. 월청검사	살처분전 일부 실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미실시	경계지역 예방강화
9. 인공수정	-	금지	금지	인공수정 행위 자체	
10. 가축시장	폐쇄	좌 등	좌 등	좌 등	감정적 폐쇄 농장 등 방문
11. 사탕	거주자의 출입금지 및 출입자 소독	소독실시	좌 등	좌 등	자체 당부
12. 차량·가축수송	통행금지	통행제한	좌 등	좌 등	지정도축장 출하목적에 한하여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집유수송	통행금지	통행금지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소독후 통행허용	
- 사료수송	통행금지	제한지역밖 통행금지	좌 등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식육운반	통행제한	좌 등	좌 등	좌 등	유반목적과 운 확인후 통행허용
- 부산물운반	통행금지	통행제한	좌 등	좌 등	유반목적과 운 확인후 통행허용
- 기타 차량	통행제한,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소독후 통행허용	좌 등	좌 등	적재물 운 확인후 통행허용, 레지목적외 차량은 통행금지

2.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방안(시안)

□ 특별관리 필요성

- 구제역 예방접종은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 현재 구제역이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발생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을 특별관리함으로써 국내 구제역 방역정책을 확립하고 향후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출 재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익과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 특별관리 대상
- 관리지역 :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 대상가축 : 예방접종을 받은 우제류 가축(예방접종에 누락된 우제류 가축도 포함)
- 예방접종 실시
- 1차 접종 : 우제류 가축 전체 강제실시
  - 2차 접종 : 2차접종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우제류 가축 모두 실시. 다만, 돼지에 대하여는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회신결과에 따라 2차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결정
-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 종축, 한우암소, 젖소, 모돈, 사슴 등 장기간 사육되는 가축
    - 축종에 따라 지명을 표시하는 약어를 이표(耳標)에 표기하거나 문신 표시
  - 비육우, 육성돈 등 단기간 비육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은 가축방역관이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다만, 돼지는 농장의 돈군별로 발급
- 사후관리
- ①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예방접종지역 시군 : 예방접종가축 관리대장 비치
      - 주소/성명/축종/두수/접종일/판매일/판매목적(도축·매매등)
    - 도축장 관할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등)
      - 주소/성명(축주·도축의뢰인)/축종/두수/도축일/구제역임상검사 등 특이사항
  - ② 예방접종 가축의 관리
    - 예방접종 지역
      - 관할 시군 : 가축 방역관이 주기적인 임상검사 실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이상가축 또는 의심가축에 대해 항원·항체검사 실시
    - 예방접종 지역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타지역 이동시 관할 시군(도축출하의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도축검사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도축을 중단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즉시 통보조치

- 도축장 근무 검사원은 이표·문신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관할 시군은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 등 이동사실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경유  
농림부장관에 보고

□ 예방접종 전두수 조기 실시를 위한 조치

- 예방주사 미접종 가축은 정부 구매에서 제외하고 도축도 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방주사 실시를 명령하고 거부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예방접종 미실시로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처분을 하게 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검토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규제 조정방안(요약)

< 기 본 방 향 >

-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단계적 해제
  - 경계지역 : 최종 발생지역 우제류 동물 살처분 완료일부터 21일 경과후 혈청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
  - 보호지역 :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을 고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30일 경과후  
혈청(항원)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  
- 단, 예방접종 가축은 해제이후도 특별관리 실시
- 경계지역 방역규제는 해제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
  - 사료·원유·도축부산물·축산분뇨·음식물 쓰레기 등은 정상 유통
  - 일정기간 질병 예찰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 지속적 유지
- 보호지역은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방역규제 조치를 부분적 으로 완화

-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해제 이전이라도 경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방역규제 부분 완화
  - 3km내 원유도 멸균유통, 종돈장 새끼돼지의 검사후 타지역 이동
  - 기타 사료·볏짚·축산분뇨 등도 자체사용, 수송차량의 소독후 통행
- 발생지역(살처분농장)의 가축 재입식은 호주, EU 등의 관례를 적용, 일정기간(30일+시험  
입식2개월) 경과후 입식 허용
- 보호지역 가축의 예방주사(1차+보강접종) 전두수 실시 추진
  - 돼지의 2차 접종은 "퍼브라이트연구소"의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
  - 예방주사 거부농가는 구매제한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 금후조치계획

- 해제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 방안, 경계지역의 조정, 도축부산물 처리조정안을 작성, 생산자 단체·전문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결정

□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 지원액 총 501억원(한육우농가 281억원)
- 지원조건 : 연리 5%, 7~12개월 분할상환 또는 1년 후 일시상환

□ 이동제한지역 거세우 수매가격

- 고급육 생산장려를 위해 수매가격 차등적용  
(500kg기준 : 3,005천원, 6,010원/1kg)
- 수소 4,887원/kg(2,444천원/500kg), 암소 5,325원/kg(2,663천원/500kg)

※ 현재 거세우에 대한 수매가격은 본회에서 건의한대로 수용을 하였으나 수소 및 암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소 및 암소에 대한 보상가격과 농가 생계자금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전국적인 수매를 실시하여 적체된 물량해소 방안에 대하여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 구제역 예방 2차접종 건의 및 회신

질의1)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향후 농림부 조치계획 및 구제역에 대한 정책 방향?

답변 : 보호지역내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해제이후에도 구제역 조기근절과 축산업 보호·육성차원에서 예방접종, 관리대장기록, 지정도축장출하도축 등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합 공청회를 거쳐 정책을 확정할 계획임.

또한 『농가와 협의없이 예방접종한 가축을 강제 도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

질의2) 인공수정 금지조치로 공태기간 손해 발생,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은?

답변 : 이동제한 기간 중 보호지역내 인공수정 금지에 따른 손실문제도 피해 농가대책에 포함하여 농가 희망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우선 지급토록 하고 있음.

아를러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준칙』을 개정하여 농업재해에 가축전염병 피해도 포함시켜 기보증금액과 관계없이 1억원이내(단체는 2억원)에서 연대 보증을 면제토록 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의 담보문제도 해결한 바 있음.